|  |  |  |
| --- | --- | --- |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판공실**  **중한 사회보험 협정 및 의정서 실행에**  **관한 통지**  인사청발[2012]12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국):  2011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시행 이후, 중한 양국은 상대국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사회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협상을 전개하였고, 2012년 10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험협정>(이하 “협정”으로 약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사회보험협정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약칭)를 정식 체결하였다. 2012년 12월 26일, 양국정부의 유관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험협정의정서 시행에 대한 MOU>(이하 “MOU”)를 체결하였다. 쌍방은 <협정>과 <의정서>가 2013년 1월 16일 정식 발효됨에 동의하였다. <협정>과 <의정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협정> 주요내용  1) 상호 면제하는 보험종류  중국은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실업보험이고,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이다.  2) 한국에서 근로하는 중국인 중 유관 사회보험료의 납부면제를 적용하는 대상자  (1) 파견인원. 국내기업 등이 해당 단위가 한국에 설치한 회사 또는 기구(해당 단위의 분공사, 부속회사 또는 분지기구 포함)로 파견하고, 이미 중국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근무자를 의미한다.  (2) 단기취업인원. 중국인이 한국에서 경영장소가 있는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미 중국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근무자를 의미한다.  (3) 자영업자 및 투자자. 중국인이 한국에서 임시로 자영활동에 종사하거나, 합법적으로 외상독자 또는 합자기업에 투자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며 해당 외상독자기업 또는 합자기업에 임직하는, 이미 중국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자를 의미한다.  (4) 항해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 중인 근로자. 중국 국기를 단 항해선박에 승선하여 고용된 자 및 통상적으로 중국 영토 내에서 거주하고 한국 국기를 단 항해선박에 승선하고 고용된 자와 고용된 자의 회사 본사가 중국에 소재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관리직원 또는 승무원을 의미한다.  (5) 외교 및 영사기구 구성원. 주한 중국 외교기구 및 그 근무인원이 고용한 중국 국적 인원(이하 “외교 직원”으로 약칭)을 의미한다.  (6) 정부 또는 공공기구 고용된 자.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고용된 자가 한국에 근무하도록 파견된 경우를 의미한다.  3)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 중 사회보험료 납부 면제를 적용하는 자에 대한 조건은 중국과 동일하다.  4) 사회보험료 납부 면제 기한  최초 신청시에는 자동 면제된다. 다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고, 처리기구가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1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료 납부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장기한은 60개월이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비준을 받아 면제기한을 120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인 경우, 비준을 받아 최후 1회 면제기한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최장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류에 해당하는 자의 면제기한은 최장 60개월이다.  5) 주관기관, 연락기구 및 처리기구  (1) 주관기관: 중국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한국은 보건복지부이다.  (2) 연락기구: 중국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국제합작사, 한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처이다.  (3) 처리기구: 중국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 한국은 국민연금공단이다.  2. <의정서> 주요내용  1)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에 대해 보험료납부를 임시면제하는 보험종류: 근로자기본의료보험  2)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 중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를 임시면제하는 대상:  <협정>에 약정된 파견인원, 단기 취업인원, 자영업자 및 투자자, 정부 또는 공공기구에 고용된 자  3)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 중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를 임시면제하는 조건  (1) 대한민국 국민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에 이미 가입하였고 상업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중국은 중국에서의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 의무를 임시 면제할 것이다.  (2) 대한민국 국민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상업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에 대해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를 임시면제하는 기한  (1) 면제기한은 <협정> 발효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장 면제기한은 2014년 12월 3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상업건강보험의 만기일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해당 상업건강보험 만기일부터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2014년 12월 31일 이후, 중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중화인민공화국 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 한국에서 근로하는 중국인이 한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의정서>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근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의정서>와 <협정>의 관계  <의정서>는 <협정>과 분리할 수 없는 구성문건이며, 중국에 있는 한국인이 조건이 허여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를 임시 면제하도록 하는 임시성격의 조치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3. 협정에 의한 양로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면제에 대한 관리방법  1) 한국에서 근로하는 중국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면제관련 증빙을 처리하는 절차  중국 국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미 도시근로자양로보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에 가입하였고, 적시에 전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료의 납부면제 신청을 위한 <보험가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는 <중한사회보험협정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보험가입증명> 신청표>(이하 “신청표”로 약칭, 별첨 양식)를 작성하고 소재단위의 인감을 날인한다. <신청표>는 유관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URL주소는 [www.mohrss.gov.cn](http://www.mohrss.gov.cn)이다. (웹사이트 내의 “인터넷 업무처리란” 중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한다)  (2) 작성된 <신청표>(1식 3부)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보험가입 소재지(성, 구, 현지역)의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처리기구는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오류여부를 심의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기구가 분리 설치된 경우, 각각의 기구가 별도로 날인하고, 각각 1부의 <신청표>를 보관한다.  (3)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날인한 <신청표>를 등기우편 또는 택배방식으로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 사무실로 발송한다.  주소: 북경시 동성구 화평리 5구 10호 빌딩, 우편변호: 100013  전화: 010-84216422，84229207  (4) 제1류에서 제4류, 제6류에 해당하는 자가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 사무실은 <신청표>를 수령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보험가입증명>을 발송한다. <보험가입증명>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5) 제1류에 해당하는 자가 면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은 <신청표>를 수령한 후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결과를 국제합작사에 보고한다. 국제합작사의 재심의 결과를 확인한 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처에 통보한다. 국제합작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처의 결정을 접수한 후,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보험가입증명>을 발급한다.  (6)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구(전체 또는 일부의 재정성자금을 지원받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조직을 의미함)가 파견한 인원 즉, 제6류에 해당하는 인원이 <신청표>를 작성하는 경우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인 경우, <신청표>에 소재 정부기관 또는 단위의 인사부처 인감을 날인한다.  ② 정부기관에서 채용한 자인 경우, <신청표>에 보험가입 소재지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처리기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③ 사업단위, 단체조직 등(기업화관리하는 사업단위 제외)에 소속된 자의 경우, <신청표>에 소재단위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단위의 법인등기증서 사본을 첨부한다.  (7) 신청인은 면제기한 내에 <보험가입증명>을 지참하여 한국 처리기구에 협정규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면제를 처리하는 관리방법  (1)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가 중국에서 근로하는 자가 제출하고 한국 처리기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본 확인, 사본 보관)을 수리한다.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한 익월부터 <협정> 규정에 따라 유관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신청자가 <협정> 발효 후에 중국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 중국에 도착하여 근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소재지 사회보험처리기구에 한국측 처리기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정보를 확인한 후, 증명서에서 정한 면제기한을 기준으로 <협정>에서 정한 유관 사회보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중국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신청자가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한 익월부터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면제기한 이전, 신청자는 중국에서의 근로 개시일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협정> 이후 한국측 면제대상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국적자에 대한 사회보험 등기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시에 <외국인 사회보험정보 조회시스템>에 등록하고 심사 받은 납부면제 정보를 조회한다. 임시적으로 조회결과가 제시되지 않거나 보험가입자가 제시한 <보험가입증명>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서 제시된 정보에 대하여 다시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고지한다. (<외국인 보험가입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및 연합네트워크 지표 업로드 업무에 관한 통지>인사부함(2012)61호 참고)  (4)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이 <보험가입증명>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의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촉구한다.  (5) <협정>에서 근로자기본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의 면제를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의 기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의정서에 의거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를 임시 면제하는 것에 관한 관리방법  (1)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신청인이 제출한 한국 처리기구가 발급한 <상업의료보험증명>을 수리하고,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임시 징수면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2) 자격심사에 합격하고 정보가 확인되면,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신청인이 <상업의료보험증명>을 제출한 익월부터 근로자기본의료보험료 납부의무를 임시면제한다. 동시에, 면제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지불을 잠정 중단한다. 심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신청인은 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3)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외국인 보험가입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의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 및 확인한다.  (4) 중국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이 <상업의료보험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은 <협정>과 <의정서> 발효일 기준으로 시행한다. 중국 및 한국정부가 2003년 2월 28일 체결한 <양로보험료 상호 면제에 관한 임시 조치협의>는 이와 동시에 종지한다.  각 급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서는 이번 업무를 중시해야 하며, 각지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실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심사 및 확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유관 정보를 성실하게 대조 확인하여 보험료 납부의 과소문제나 허위상황 발생을 예방한다. 또한, 면제기한 중 신청인이 중국 국내에서 보험료를 전액 적시에 납부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는다는 등의 유관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각 지역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우리 부에 보고하기 바란다.  연락담당자：요천(姚茜)  전화：010-84229207，84222731（팩스）  첨부문건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의정서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보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첨부3-1 중국인 보험가입 증명서  첨부 3-2 한국인 보험가입 증명서  첨부 3-3 중국측 상호면제(연장) 인원명단  첨부 3-4 한국측 상호면제(연장) 인원명단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  첨부4-1 사적 의료보험 증명서  첨부4-2 중국기본의료보험 납부면제 인원명단  5. 중한 사회보험협정에 의거한 <보험가입증명>발급 신청표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판공실  2012년 12월 28일 |  |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  **关于实施中韩社会保险协定和**  **议定书的通知**  人社厅发[2012]120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和社会保障厅（局）：  2011年7月1日《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实施以来，为有效解决中韩两国在对方国工作的人员双重缴纳社会保险费的问题，中韩两国政府通过多轮谈判于2012年10月29日正式签署了《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社会保险协定》（以下简称《协定》）和《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社会保险协定议定书》（以下简称《议定书》）。2012年12月26日，两国有关机构签署了《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社会保险协定的行政协议》（以下简称《行政协议》）和《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社会保险协定议定书的谅解备忘录》（以下简称《谅解备忘录》）。双方商定，《协定》和《议定书》于2013年1月16日正式生效。为确保《协定》和《议定书》的贯彻执行，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协定》主要内容  （一）互免险种范围。  中国为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失业保险；韩国为国民年金、政府公务员年金、私立学校教职员工年金、雇佣保险。  （二）中方适用免除在韩缴纳相关社会保险费的人员。  1.派遣人员。指国内企业等单位派遣到该单位在韩国设立的公司或机构（包括该单位的分公司、附属公司或分支机构）的已在国内参保工作人员。  2.短期就业人员。指中方在韩国被有经营场所的雇主雇佣、雇佣期限不超过5年的已在国内参保人员。  3.自雇人员和投资者。指中方在韩国临时从事自雇活动和依法注册投资外商独资或合资企业并在韩国居住、在该外商独资企业或合资企业中任职的已在国内参保人员。  4.在航海船舶和航空器上受雇人员。指在悬挂中国船旗的航海船舶上的受雇人员及通常居住在中国领土上，在船旗为韩国的航海船舶上的受雇人员;受雇企业总部在中国的航空器上受雇的管理人员或机组成员。  5.外交和领事机构人员。指中国驻韩国外交机构及其工作人员雇用的中方人员（简称外交雇员）。  6.政府或公共机构受雇人员。指受雇于中国中央政府、地方政府或其他公共机构被派到韩国工作的人员。  （三）韩方适用免除在华缴纳社会保险费的人员与中方适用人员的条件类同。  （四）免除缴纳社会保险费的期限。  首次申请为自动免除，但仍需申请并持经办机构出具的证明。  第一类人员首次可申请免除缴费期限最长为60个日历月。如工作需要，经批准后免除期限可延至120个日历月。在特殊情况下，经批准予以最后一次免除期限的延长，最长不得超过36个日历月。  第二类人员免除期限最长为60个日历月。  （五）主管机关、联络机构和经办机构。  1.主管机关：中方为人力资源社会保障部；韩方为保健福祉部。  2.联络机构：中方为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际合作司；韩方为保健福祉部国民年金政策处。  3.经办机构：中方为人力资源社会保障部社会保险事业管理中心；韩方为国民年金公团。  二、《议定书》主要内容  （一）韩方适用暂时免除在华人员缴纳保险费的险种。职工基本医疗保险。  （二）韩方适用暂时免除在华缴纳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人员。  《协定》中规定的派遣人员、短期就业人员、自雇人员和投资者、政府或公共机构受雇人员。  （三）韩方适用暂时免除在华缴纳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条件。  1.大韩民国国民在《协定》生效之日前已在中华人民共和国领土上工作并按照《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的规定参保，且已购买了商业健康保险的，中方将暂时免除其在华缴纳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义务。  2.如果大韩民国国民在《协定》生效之日前已在中华人民共和国领土上工作，但未购买商业健康保险，则必须按照规定参加中华人民共和国职工基本医疗保险。  （四）韩方适用暂时免除在华缴纳职工基本医疗保险的期限。  1.免除期限自《协定》生效之日起计算，最长免除期限不得超过2014年12月31日。  2.若其商业健康保险在2014年12月31日之前到期，则应自其商业健康保险到期之日起开始缴纳职工基本医疗保险费。  3.2014年12月31日后，所有在华工作的大韩民国国民必须参加中华人民共和国职工基本医疗保险。  （五）中方在韩人员参加韩国国民健康保险情况。  《议定书》不影响在大韩民国领土上工作的中华人民共和国国民参加大韩民国国民健康保险。  （六）《议定书》和《协定》的关系。  《议定书》是《协定》不可分割的组成部分，是仅针对在华的韩方员工有条件地暂时免除缴纳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临时性措施。  三、依据协定免除养老保险和失业保险费的管理办法  （一）中方在韩人员办理免缴相关社会保险费证明的流程  已在国内按规定参加了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和失业保险，并按时足额缴纳保险费的人员，可以按照以下程序办理申请免除在韩缴纳国民年金、政府公务员年金、私立学校教职员工年金、雇佣保险费的《参保证明》。具体流程如下：  1.申请人填写《办理根据中韩社会保险协定出具的〈参保证明〉申请表》（以下简称《申请表》，样式附后），并加盖所在单位公章。《申请表》可从部政府网站上下载，网址：www.mohrss.gov.cn(进入后点击：“网上办事大厅”中的“表格下载”)。  2.申请人或代理人持填写后的《申请表》（一式3份）交由参保所在地（省、市、县区）的社会保险经办机构审核；经办机构在审核其参保情况无误后，加盖印章。负责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和失业保险的机构若分设，应分别核实盖章，并各留存1份《申请表》备案。  3.申请人或代理人将盖章后的《申请表》挂号（或快递）寄至部社会保险事业管理中心办公室。  地址：北京东城区和平里5区10号楼，邮编：100013  电话：010-84216422，84229207  4.对于第一至四类及第六类首次申请人员，部社会保险事业管理中心办公室在收到《申请表》的15个工作日内通知申请人并向申请人寄出《参保证明》；未签发《参保证明》的应及时通知申请人并说明原因。  5.对于第一类人员申请延长免除期限的人员，部社会保险事业管理中心在收到《申请表》进行审核后，将审核结果报送我部国际合作司；待我部国际合作司复核后，通报大韩民国保健福祉部国民年金政策处。我部国际合作司在接到大韩民国保健福祉部国民年金政策处的决定通知后，安排部社会保险事业管理中心向申请人通知结果并视情况出具《参保证明》。  6.对于政府或其他公共机构（指全部或部分适用财政性资金的国家机关、事业单位和团体组织）派出的人员即第六类人员填写《申请表》时，  （1）如果是公务员或是参照公务员管理的人员，《申请表》只需加盖其所在政府机关或单位人事部门印章。  （2）如果是政府机关聘用的人员，《申请表》应加盖参保所在地养老保险和失业保险经办机构的印章。  （3）如果是事业单位、团体组织等（不含企业化管理的事业单位）人员，《申请表》须加盖所在单位印章，并附其单位的法人登记证书复印件。  7.申请人持《参保证明》在免除期限内可以向韩国经办机构申请免缴协定规定的保险费。  （二）韩方在华人员免缴相关社会保险费的管理办法  1.各地社会保险经办机构受理韩方在华工作人员提交的由韩国经办机构开具的《参保证明》（审核原件，留存复印件备案）。核准信息后，将在申请人提交《参保证明》的次月免除其按《协定》规定的相关社会保险缴费义务。  2.若申请人是在《协定》生效后来华工作的，则其可以在到华工作之日起3个月内向工作所在地社会保险经办机构提交由韩方经办机构开具的《参保证明》。该地社会保险经办机构核准信息后，将按证明书规定的免缴期限免除其《协定》规定的相关社会保险缴费义务；若其在华工作之日起3个月后提交《参保证明》的，该地社会保险经办机构将自申请人提交《参保证明》的次月起免除其缴费义务，免除期限前该申请人应当从在华工作之日起参保缴费。  3.各地社会保险经办机构应通过部《外国人参保信息查询系统》查询和确认《协定》生效后韩方免缴人员信息。在办理韩方在华工作人员参保登记业务时，要及时登录《外国人参保信息查询系统》查询核准其免缴信息，对暂无查询结果的或与参保人出示的《参保证明》不符的情况，应在系统中提交信息做进一步核查，并将结果告之本人。(详见《关于做好外国人参保信息查询系统建设和联网指标上报工作的通知》人社部函〔2012〕61号）。  4.凡不能出具《参保证明》的韩方在华工作人员，各地社会保险经办机构应按《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的规定，督促其参加中国的社会保险。  5.除《协定》规定的免缴职工基本养老保险和失业保险外，韩方在华工作人员应按《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规定，参加中国其他社会保险险种。  四、依据议定书暂免韩方在华工作人员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管理办法  1.各地社会保险经办机构受理申请人提交的由韩国经办机构开具的《商业医疗保险证明》，并审核其暂时免缴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资格条件。  2.资格审核通过和信息核准后，各地社会保险经办机构将在申请人提交《商业医疗保险证明》的次月暂时免除其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缴费义务，同时停止支付暂时免除期间所发生的医疗费用。审核不通过的，申请人仍须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  3.各地社会保险经办机构在部《外国人参保信息查询系统》查询和确认韩方免缴医疗保险人员信息。  4.凡不能出具《商业医疗保险证明》的韩方在华工作人员，应按《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规定，参加中国职工基本医疗保险。  以上规定自《协定》和《议定书》生效之日起开始执行，中韩政府于2003年2月28日签订的《关于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即行终止。  各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要高度重视此项工作，各地社会保险经办机构应本着如实、便捷的原则及时办理申请和核准有关手续，在审核时要认真核对相关信息，防止欠费和虚假现象发生，同时有义务告知申请人在申请的免缴期限内也应在国内按时足额缴纳保险费，以保障自己的权益等相关内容。各地在执行中如发现问题，请及时向我部报告。  联系人：姚茜  电话：010-84229207，84222731（传真）  附件：  1.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社会保险协定  2.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社会保险协定议定书  3.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社会保险协定的行政协议  附件3-1：中方参保证明  附件3-2：韩方参保证明  附件3-3：中方互勉（延长）人员名单  附件3-4：韩方互勉（延长）人员名单  4.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社会保险协定议定书的谅解备忘录  附件4-1：商业医疗保险证明  附件4-2：中国基本医疗保险免除缴费人员名单  5.根据中韩社会保险协定出具的《参保证明》申请表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 2012年12月28日 |